

청구/항변/반박 전략 문서

1. 사건 개요

1.1 원고 목표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제기

1.2 핵심 사실

- 우방캐피탈이 2013.10.8. 개성금속에 10억원 대출(변제기 2015.11.30.), 김수경이 연대보증 및 공장건물·부지 담보 제공
- 개성금속이 2015.12.1. 부도,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2억 2,000만원 대위변제
- 공장용지 임의경매(2016.4.~2018.1.31.): 시가 11억원 → 낙찰 9억 6,000만원(배당받음)
- 김수경의 재산처분: 여의도 아파트(4억원→유재석 양도), 강남구 주공아파트(5억원→박수용 매도), 김포 토지(3억원→김수철 이전)

2. 당사자

2.1 원고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2.2 피고

피고
김수경
유재석
박수용
김수철
최종찬

3. 청구 마스터 표

3.1 청구권 개요

청구 ID	청구권	사건 종류	원고	피고
C-001	보증채무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김수경
C-002	보증채무금 청구	보증채무금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김수경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유재석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유재석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박수용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박수용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김수철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김수철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캐피탈 주식회사	최종찬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	최종찬

3.2 개별 청구권 상세 정보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주채무자'라 합니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며, 피고 김수경은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3. 10. 8. 주채무자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30., 약정이율 월 0.5%, 지연배상금률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임의경매를 통한 배당 주채무자는 2015. 11. 30.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 소유의 공장용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2016타경8654) 절차에 참여하였고, 2018. 1. 31. 배당기일에서 960,000,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4. 변제충당 및 잔존 보증채무의 특정 위 배당기일인 2018. 1. 31. 기준으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 총액은 1,260,000,000원(대출 원금 1,000,000,000원 및 미납 이자 등 260,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96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260,000,000원에 먼저 충당되어 이자 채무는 전액 소멸하였고, 남은 700,000,000원이 원금 1,000,000,000원에 충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잔존 대출원금은 300,000,000원(= 1,000,000,000원 - 70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5. 결론 결국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총당일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요소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로 구성되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없음 채권자가 주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 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면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으로 보며, 특약으로 제외된 경우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할 책임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충성을 제거하는 특약이므로, 공동보증인 각자에게 전액청구하려면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단순 보증채무 청구 시는 피고의 최고·검색 항변 후 재항변으로 주장 가능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주채무자 권리행사 또는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 가능
법률행위	[F-001]: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22]: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서증 목록	[F-001]: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E-008 (대출명세표)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22]: E-002 (배당표)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주채무자, 피고 김수경은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무 연대보증 원고는 2014. 12. 1. 주채무자 개성금속의 대출 등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 김수경은 주채무자 개성금속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부대비용 등 구상채무 전액을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 주채무자 개성금속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15. 12. 1. 채권자인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총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등 일부 증빙이 누락되어 있으나(추후 보완하여 제출 예정), 원고가 220,000,000원을 실제 대위변제한 것은 실체적 사실입니다. 4.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청구금액의 특정 피고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약정상 한도액이 200,000,000원이기는 하나, 이는 주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한도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절대적 상한이 아닙니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대위변제원금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가 현실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실제 대위변제액인 220,000,000원이 피고의 구상보증책임 원금으로 확정됩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사 채무에 적용되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건요소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없애는 특약으로서, 청구 내용이 단순 보증채무이행이면 피고의 최고·검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주장 가능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보증채무에도 적용되며,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사실이나 이미 한 권리행사로 재항변 가능 주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주채무에서 발생해야 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없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과 지연손해금채무의 연체이율이 주채무와 별도로 정해짐
법률행위	[F-004]: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서증 목록	[F-004]: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	---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소외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한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에 대한 대출채권자이고, 소외 김수경은 개성금속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 유재석은 김수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여의도동 장미아파트를 양수한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확정 가. 원고는 2013. 10. 8. 개성금속에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김수경은 같은 날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개성금속은 2015. 11. 30. 대출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써 원고의 김수경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어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였습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1. 31. 공장용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여 총 대출원리금 12억 6,000만 원 중 9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뒷받침하는 원고의 김수경에 대한 잔존 피보전채권액은 3억 원으로 구체화 및 확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 김수경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막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1. 31. 피고와 사이에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하여 4억 원 상당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제1912호)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김수경이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김수경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한 불가분적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잔존 피보전채권액(3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평가액(4억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의 경우 이를 가분하여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의 사후 소멸, 목적물의 멸실, 전득자의 선의 등 가액배상으로 전환하여야 할 법적·사실적 예외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은 원칙에 따라 원물반환(말소등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확정패소된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므로 이

	행기의 도래는 성립요건이 아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 미발생 채권도 ①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 가능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무상양도·담보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제소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청구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0]: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F-022]: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0]: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F-022]: E-002 (배당표)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 채무자 김수경과 피고 사이에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31.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31.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 당사자의 지위 원고(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소외 개성금속의 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한 채권자이며, 채무자 김수경은 위 보증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 유재석은 채무자 김수경으로부터 유일한 부동산인 여의도동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은 수익자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무자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신용보증약정). 이후 개성금속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비록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상 표면적인 보증한도액은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하여 현실화된 손해금액이자 확정된 구상금 채권액은 22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서 본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대위변제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입증자료는 추후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1.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여의도동 장미아파트(실거래가 40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접수 제191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 원상회복의 방법 본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서, 사해행위 당시 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이 사후에 소멸하였다거나 전득자가 선의라는 등의 가액배상으로 전환할 만한 법정 예외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실체법적 원칙에 따라 주위적으로 현물반환 구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2016. 1.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나 무상양도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거래조건, 정상적 거래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0]: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0]: E-0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 박수용과 소외 김수경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박수용은 원고 우방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에 대출을 실행한 여신채권자이며,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 박수용은 소외 김수경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매수한 자로서 사해행위의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3. 10.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금액 1,00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하였으며, 소외 김수경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11. 3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대출원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액배상)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선순위 담보채무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국민은행 130,000,000원, 하나은행 50,000,000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20,000,000원, 소외 최상수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 상당)가 존재하였고,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적물에 다수의 인수채무 및 담보권이 얹혀 있어 원물반환이 사실상, 법률상 현저히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만 1,000,000,000원에 달합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매매대금 430,000,000원)을 기초로 선순위 담보채무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국민은행 130,000,000원, 하나은행 50,000,000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를 공제한 잔존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150,000,000원입니다(신용보증기금 및 최상수 채무는 담보권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공동담보 공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표면적 매매대금 430,000,000원 중 합계 4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30,000,000원 (= 430,000,000원 - 400,000,000원)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0,000,000원을 최종 가액배상의 상한액으로 산정합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향후 감정결과와 변론종결시 권리상태를 반영하여 보정하겠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나 무상양도 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는 취소청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통정의 허위의사표시로 인한 가장매매 등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2]: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 [F-016]: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2]: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F-016]: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채무자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에 관하여 2017. 8. 31. 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7. 접수 제805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소외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보증한도 2억 원). 이후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 원리금 2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신용보증약정서상 보증한도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실제 대위변제로 인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구상금 채권액은 2억 2,000만 원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액으로 특정합니다(대위변제 사실을 직접 입증할 영수증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는 소송 진행 중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8. 31. 피고 박수용과 자신의 재산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을 체결하였고, 2017. 9.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넉넉히 추정됩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주위적 청구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국민은행 채무(1억 3,000만 원), 하나은행 채무(5,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채무(1억 원) 등 선순위 담보권 성격의 부담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담보권들이 사해행위 이후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현재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던 담보권의 사후 소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가액배상을 단독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만약 향후 변론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사후 소멸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유로 원물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액배상액의 한도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잔존가치는 매매가액 4억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승계한 선순위 채무 합계 2억 8,000만 원(국민은행 1.3억 원, 하나은행 0.5억 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입니다(기타 신용보증기금 및 최상수 채무는 담보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 소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잔존가치(1억 5,000만 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억 2,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예비적 가액배상액은 위 공동담보 잔존가치 전액인 1억 5,000만 원으로 특정합니다(이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의 잠정 특정액이며 향후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보정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유일한 부동산 매각행위나 무상양도행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가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통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선의로 봄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음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2]: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 [F-016]: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2]: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E-017 (不動産賣買契約書) [F-016]: E-007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2017.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개성금속(이하 '개성금속')에 대출을 실행한 채권자이며,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는 채무자 김수경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3. 10. 8. 개성금속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김수경은 같은 날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개성금속은 2015. 11.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1,000,000,000원의 대출원금을 연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김수경은 원고에 대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 김수경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김수경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7.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975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와 김수경 사이의 2017. 9. 24.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주위적 원물반환 및 예비적 가액배상) 가. 주위적 원상회복 (원물반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 김수경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예비적 원상회복 (가액배상)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원물반환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의 부동산을 회복하게 되어 부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7. 9. 26. 소외 최종찬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후 수익자에 의해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실상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원고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그 반환액은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매매대금 등에 비추어 300,000,000원으로 평가되므로,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3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며, 확정판결을 요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는 취소소송 자체가 기각된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툼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발생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 제기하는 경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제기 가능하다 피보전채권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2017.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김수경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5. 접수 제29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와 소외 김수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김수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소외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신용보증약정서상 보증한도액은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 현실적으로 지출하여 확정된 대위변제금액은 2억 2,000만 원이므로, 원고의 소외 김수경에 대한 구상금채권 220,000,000원을 본건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합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원장 및 대위변제 금융자료 등은 소송 과정에서 추가 서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 김수경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9. 24. 피고(수익자) 김수철과 자신의 부동산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매매가액 30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2017. 9.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주위적·예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원상회복 - 말소등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채무자 김수경과 피고 사이의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인 2017. 9. 24. 자 매매계약이며,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아닙니다). 나. 예비적 청구 (가액배상) 피고(수익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7. 9. 26. 소외 최종찬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접수 제33456호)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으로는 채무자가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원물반환(말소등기)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은 매매대금인 300,000,000원 상당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20,000,000원이므로, 회복할 가액배상액의 한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000,000원입니다. 5. 결론 결국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220,000,000원 한도 내의 사해행위 일부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금(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민사 법정이율 연 5% 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존재, 성립시기, 재산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시 악의가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해의사 입증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상당하더라도 사해의사가 간주되며, 반대로 경매 진행 중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는 사해의사 부정

	가등기를 포함한 무효의 법률행위도 외관상 유효한 법률관계를 가지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취소청구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회복청구는 기간 경과 후에도 제기 가능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1. 채무자 김수경과 수익자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개성금속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며, 소외 김수경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채무자)입니다. 소외 김수철은 김수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이고, 피고 최종찬은 김수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3. 10. 8. 주식회사 개성금속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소외 김수경은 같은 날 개성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개성금속은 대출변제기가 도래한 2015. 11. 30.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수경에 대하여 위 10억 원의 대출금 잔액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소외 김수경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4. 수익자 소외 김수철과 자신의 재산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소외 김수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소외 김수철의 악의는 넉넉히 추정됩니다. 4. 피고(전득자)의 악의 피고는 2017. 9. 26. 수익자 김수철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전득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이상 전득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악의의 전득자로서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특정 및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전득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

	위'입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은 피고와 김수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아니라 채무자 김수경과 수익자 김수철 사이의 2017. 9. 24.자 매매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득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2017. 9.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김수경과 수익자 김수철 사이의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성립될 예정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금전채권인 한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으며, 사해행위 당시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피보전채권 요건과 사해의사 요건은 객관적·주관적 요건으로 구분되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들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법률행위	[F-002]: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6]: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2]: E-012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F-006]: E-008 (대출명세표)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목	내용
청구취지	- 채무자 김수경과 소외 김수철 사이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한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김수철에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334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 당사자의 지위 원고 우방신용보증 주식회사는 채무자 김수경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소외 김수철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이며, 피고 최종찬은 수익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무자 김수경은 2014. 12. 1. 소외 개성금속이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채무자 김수경에 대하여 220,000,00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구체화된 원고의 실제 대위변제액은 22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대위변제영수증 및 대출원장 등 추가 금융자료는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증으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전득행위 가. 채무자 김수경은 2017. 9. 24. 자신의 재산인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347 잡종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외 김수철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5. 소외 김수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이후 수익자 소외 김수철은 2017. 9. 26. 피고 최종찬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3345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 김수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수철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됩니다. 나아가 수익자 소외 김수철 및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법률상 강하게 추정됩니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되어야 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설정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전득자를 상대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김수경과 수익자 소외 김수철 사이의 2017. 9. 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익자 소외 김수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합니다.
요건요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행위나 무상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됨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통상적 거래에 의해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가 인정됨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음
법률행위	[F-005]: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008]: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F-017]: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 [F-019]: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F-020]: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서증 목록	[F-005]: E-005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F-008]: 증거공백 [F-017]: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19]: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F-020]: E-0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4. 예상항변 및 반박

신뢰도는 현재 확보된 사실, 증거, 법리의 연결 정도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이다. High는 바로 소장 및 준비서면 전략에 반영하기 좋은 수준, Medium은 기본 구조는 타당하지만 추가 사실 또는 증거 보강이 필요한 수준, Low는 방향성은 있으나 사실관계 또는 증거 연결의 추가 보강이 더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자신이 단순 보증인이라 주장하며, 주채무자인 개성금속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근거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주채무자 권리행사 또는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 가능 충족과 증거연결(E-012/F-002)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주채무자 권리행사 또는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 가능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주채무자 권리행사 또는 연대보증 사실로 재항변 가능,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충성을 제거하는 특약이므로, 공동보증인 각자에게 전액청구하려면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며, 단순 보증채무 청구 시는 피고의 최고·검색 항변 후 재항변으로 주장 가능;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High

C-001: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원고와 개성금속 간의 10억 원 대출과 관련된 주채무의 발생이나 피고 자신의 보증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로 구성되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없음 충족과 증거연결(E-012/F-001)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로 구성되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없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로 구성되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없음; F:F-001, F-002; E:E-008, E-012
신뢰도	Medium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채무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주채무의 발생이나 보증채무의 성립 자체를 다룰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4, 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보증채무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체결이며, 주채무 없이는 보증채무가 존재할 수 없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보증채무에도 적용되며, 주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F:F-004, 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2: 보증채무금 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단순 보증인임을 전제로 먼저 주채무자인 개성금속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며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사실이나 이미 한 권리행사로 재항변 가능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사실이나 이미 한 권리행사로 재항변 가능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없애는 특약으로서, 청구 내용이 단순 보증채무이행이면 피고의 최고·검색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주장 가능,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용이성을 증명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대보증사실이나 이미 한 권리행사로 재항변 가능;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확정패소된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충족과 증거연결(E-008/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확정패소된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피보전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될 필요는 없으나 확정패소된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므로 이행기의 도래는 성립요건이 아님; F:F-002, F-006, F-022; E:E-002, E-008, E-012
신뢰도	High

C-00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대물변제로 양수한 것이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무상양도·담보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충족과 증거연결(E-014/F-01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무상양도·담보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무상양도·담보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F:F-010; E:E-014
신뢰도	Medium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유일한 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 채무에 대한 정당한 대물변제였다고 수익자의 선의를 주장할 것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14/F-01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거래조건, 정상적 거래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F:F-010; E:E-014
신뢰도	Medium

C-00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서상 표면적인 보증한도액이 2억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것이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이익을 가지게 되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 박수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무자 김수경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충족과 증거연결(E-007, E-017/F-012, F-01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F:F-012, F-016; E:E-007, E-017
신뢰도	Medium

C-00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의 채무자 김수경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8, E-012/F-002, 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Medium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 박수용은 채무자 김수경과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적정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가짐 충족과 증거연결(E-007, E-017/F-012, F-01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가짐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가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통상적 거래로 적정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선의로 봄; F:F-012, F-016; E:E-007, E-017
신뢰도	High

C-006: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재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음,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김수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며, 확정판결을 요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는 취소소송 자체가 기각된다 총족과 증거연결(E-008, E-012/F-002, 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며, 확정판결을 요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는 취소소송 자체가 기각된다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며, 확정판결을 요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는 취소소송 자체가 기각된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취소로 이익을 받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금전지급행위가 증명인지 변제인지 다툼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High

C-00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김수경과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총족과 증거연결(E-001/F-017, F-019)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한다; F:F-017, F-019; E:E-001
신뢰도	Medium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채무자 김수경과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시 악의가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총족과 증거연결(E-001/F-017, F-019)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시 악의가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 성립 시 악의가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선의 판단은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유일한 재산의 매각이나 무상양도의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 F:F-017, F-019; E:E-001
신뢰도	Medium

C-00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존재, 성립시기, 재산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총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존재, 성립시기, 재산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존재, 성립시기, 재산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원고의 채무자 김수경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부인할 것이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8, E-012/F-002, F-006)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금전채권인 한 그 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으며, 사해행위 당시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기한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원칙이나, 기초적 법률관계론에 의해 사해행위 당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성립될 예정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있음; F:F-002, F-006; E:E-008, E-012
신뢰도	High

C-00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수익자인 김수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선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할 것이다.
핵심 쟁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충족과 증거연결(E-001/F-017, F-019, F-02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피보전채권 요건과 사해의사 요건은 객관적·주관적 요건으로 구분되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들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F:F-017, F-019, F-020; E:E-001
신뢰도	Medium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1

항목	내용/세부
유형	부인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이다.
핵심 쟁점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충족과 증거연결(E-005/F-005)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피보전채권의 존재, 성립시기, 채권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F:F-005; E:E-005
신뢰도	Medium

C-0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항변/재반박 2

항목	내용/세부
유형	항변
상대방 예상 항변/주장	피고 최종찬은 수익자 김수철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것이다.
핵심 쟁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충족과 증거연결(E-001/F-020)의 충분성으로 해당 항변 배척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재반박	원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및 연결 사실·증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요건사실 부합성을 탄핵할 수 있다.
요건사실 항목(사실/증거/법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F:F-020; E:E-001
신뢰도	Medium